

*아래 본문에 등장하는 관련법을 클릭하시면 관련법령이 링크되도록 설정된 문장입니다.



1.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등

[자동차 이전등록 의무]

-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 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(이하 “이전등록” 이라 함)을 해야 합니다
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2조제1항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6조제1항제1호).

[자동차 이전등록 방법]

-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 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
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2조제1항·제2항,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7조제1항,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3조, 제3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).

구분	제출서류
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전등록신청서 ▪ 자동차양도증명서 ▪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(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) ▪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
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전등록신청서 ▪ 자동차양도증명서 ▪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

-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,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(이전등록 신청대행에 드는 실제비용)를 내야합니다([규제](#) 「자동차관리법」 제 12 조제 2 항 본문 및 [규제](#)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 122 조제 1 항제 2 호).

*아래 본문에 등장하는 관련법을 클릭하시면 관련법령이 링크되도록 설정된 문장입니다.

-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(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)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 12 조제 4 항).

[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]

-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 80 조제 2 호, 제 81 조제 2 호·제 3 호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1 항 및 별표 3 제 3 호).

구분		처벌 내용
이전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	자동차를 산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 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 만원 ▪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 일 초과 시 마다 범칙금 1 만원 ※ 이 경우 범칙금 한도액은 50 만원입니다.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
	자동차 매매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
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

2.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등

[취득세]

-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과세표준(중고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)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(「지방세법」 제 10 조제 1 항 본문, 제 12 조제 1 항제 2 호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 23 조제 3 항)

*아래 본문에 등장하는 관련법을 클릭하시면 관련법령이 링크되도록 설정된 문장입니다.

구분		표준세율
비영업용 승용자동차		7% (다만, 경자동차의 경우 4%)
그 밖의 자동차	비영업용	5% (다만, 경자동차의 경우 4%)
	영업용	4%
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		2%

※ 등록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 등

- 「지방세법」(법률 제10221호)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.
-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
[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]

-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(「도시철도법」 제 21 조제 1 항제 2 호 본문,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별표 2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).
- 다만, 경형자동차(이륜자동차는 제외)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(「도시철도법」 제 21 조제 1 항제 2 호 단서 및 「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」 제 4 조의 2)

※ 경형자동차란?

-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① 배기량이 1000cc미만이고, ② 길이 3.6m·너비 1.6m·높이 2.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 조 및 별표 1).

※ 그 밖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, 하이브리드자동차·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별표 2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아래 본문에 등장하는 관련법을 클릭하시면 관련법령이 링크되도록 설정된 문장입니다.

3.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 거래하기

[개인 간에 거래 시 주의사항]

-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, 연식, 주행거리,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내 자동차의 가격을 정한 뒤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※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(<http://www.ecar.go.kr>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것입니다([규제](#) 「자동차관리법」 제 12 조제 1 항 참조). 다만,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.

[계약서 작성하기]

-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, 계약서 특약 부분에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.
- ※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(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).

[소유권 이전등록하기]

- 자동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([규제](#) 「자동차관리법」 제 12 조제 1 항, [규제](#)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 33 조, 별지 제 14 호서식 및 별지 제 15 호서식).

[이전등록신청서](#) / 자동차등록원부 [자동차양도증명서](#)

-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(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)
-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
-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

*아래 본문에 등장하는 관련법을 클릭하시면 관련법령이 링크되도록 설정된 문장입니다.

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-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(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)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 12 조제 1 항, 제 4 항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 26 조제 1 항제 1 호).
- ※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<중고차 구입하기-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-자동차 이전등록하기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.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 팔기

[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 시 주의사항]

-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(규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 53 조제 1 항 본문).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한다면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나 직원이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(<http://carku.co.kr>)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(<http://kuca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[수수료 및 관리비용 지불]

-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와 관리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 65 조제 1 항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 122 조제 1 항).

구분	내용
매매알선수수료	▪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
등록신청대행수수료	▪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
관리비용	▪ 매매용자동차의 보관·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(다만, 관리비용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)

*아래 본문에 등장하는 관련법을 클릭하시면 관련법령이 링크되도록 설정된 문장입니다.

자동차가격 조사·산정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동차가격 조사·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(자동차가격 조사·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)
-----------------------	--

- 위의 수수료와 관리비용 외에는 다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
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 122 조제 2 항).
 - ※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으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
(「자동차관리법」 제66조제1항제10호).

[계약서 작성하기]

-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,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- ※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(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6호서식).

[소유권 이전등록하기]

-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한 사람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 12 조제 2 항,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 33 조, 제 34 조, 별지 제 14 호서식 및 별지 제 16 호서식).

[이전등록신청서](#) / [자동차양도증명서](#)

-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
-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- ※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<중고차 구입하기-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-자동차 이전하기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